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69

발의연월일: 2021. 9. 1.

발 의 자:조오섭·김원이·송갑석

이형석 • 문진석 • 강은미

윤재갑 • 우원식 • 주철현

진성준 · 홍기원 · 인재근

조응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의 작성부실과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감리자의 업무 태만 등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원인들로 밝혀짐.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 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에서도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해체공사장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음.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작업자 등 관련 주체별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허가권자의 경우 착공신고 등의 행정처리 시 관련 서류 와 현장의 정합도와 더불어 현장안전 관리 수준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공사중지 등을 즉시 요청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또한,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수준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내용, 현장조치 사항들을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필수확인점등 주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여 해체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더불어,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도록 하는 등 해체작업자의 의무도 신설하고, 해체공사 완료 및 멸실신고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해체공사가 완료된 이후까지의 관리수준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추가적으로 해체공사 관계자가 제도를 보다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4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을 각각 제30조의3 및 제30조의2로 한다.

제30조의3(종전의 제30조의2) 제1항 전단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통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를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② 허가권자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 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며, 조치 명 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

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과정에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종전의 제30조의3)제2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법률 제17799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를 "관리자"로 한다.

- 3. 제32조제7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 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관리자에게 제출"을 "관리자와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해당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사진을 말한다) 및 동영상 촬영을 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촬영 및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 필수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하며,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해체
- 2.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 ⑥ 해체공사감리자는 당일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한다.
-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 안전점검표 현황

- 3. 현장 특기사항(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권자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
-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등)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 2.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상의 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제3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의 경

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제34조제1항 단서 중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를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면"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로부터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4.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해체공사감리자
- 15.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 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6.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로부터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 니한 자
 -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

3.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위반한 자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7.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 공사감리자
- 3.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 4.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1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을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

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8호로 하고,같은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9.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0.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1.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3.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항, 제32조제2항, 제32조제6항부터 제32조제7항까지, 제32조의2,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51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52조제7호, 제5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3, 제51조제1항제11호, 제5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해체공사 현장의 촬영 및 감리일지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형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연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 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 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u>제30조의3</u>(현장점검) ① -----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 공신고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대해 현장 점검을 하여야 한다. <후단 삭 제>

② 허가권자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해체공사 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 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 통부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하며, 필요한 조 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 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 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 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 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 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⑤ ----- 제4항----일부개정법률

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 ① (생략)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u>3일</u>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생략)

법률 제17799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저 지정 등) ① (생 략)
 -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1.·2. (생 략) <신 설>

3. (생략)

U (U 0) E D /
②
<u>7일</u>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99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u> 후단 삭제>

① (혀해고 간으)

- 1. 2. (현행과 같음)
- 3. 제32조제7항에 따른 요청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특별
 한 사유가 없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저 등) ① (생 략)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 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u>요청하여야</u> 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
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
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u>.</u>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세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요청하여야 하며, 해</u>
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u>oţ</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일 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 및 동영상 촬영을 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 필수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하며,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해체
- 2. 해체공사감리자가 주요한 해 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 ⑥ 해체공사감리자는 당일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한다.
-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 안전점검표 현황
- 3. 현장 특기사항(발생상황, 조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 리완료보고서를 해당 <u>관리자에</u> 게 제출하여야 한다.

<u>⑥</u> (생 략) <신 설>

치사항 등)

- 4.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
-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권자의 요청을 따라야한다.
- 8 -----

 러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등)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 2.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상의 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 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 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 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제3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제8 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 서를 제출받은 날
 -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 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페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

------ <u>건축물을 전</u> 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

----- <u>한 경우에는</u> --

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51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신 설>

11. ·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허 가권자로부터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 험을 발생하게 한 자

12. · 13. (현행 제11호 및 제12 호와 같음)

14.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 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 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해체공사감리자

15.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 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 하게 한 자

16.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 자의 업무를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생략)

<신 설>

일부개정법률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2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1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권자로부터의 조치 명령을 따 르지 아니한 자
-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 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 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
- 3.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 자의 업무를 위반한 자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8. ~ 13. (현행 제7호부터 제12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4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다.
 -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 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 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 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 니한 자
 - 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호까지와 같음)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천만원-----

<삭 제>

2.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 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해체공사감리자

-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 3.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 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 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4.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 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 공사감리자
 - 5.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삭 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 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 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 | <삭 제> 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 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 📗 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9. (생략)

-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 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ㅣ
-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

<삭 제>

1. (현행 제9호와 같음) <삭 제>

- -----1천만원----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
 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 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 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

- 3.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신 설>

- <u>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u> 니한 자
-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 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u>자</u>

<삭 제>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 ·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
 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
 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

<신 설>

<신 설>

<신 설>

 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9.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 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
- 10.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 11.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 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3.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

 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7. (생략)
- 8.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 고를 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 리자
- 9. 제32조제5항에 따른 해체감

 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나한 자
- 10.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 <u>11.</u> (생 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

은	항	각	호	의	어!	= 7	하니	}°	4]	해
<u>당</u>	하님	=	기술	글지	-의	검	토	•	확	인
을	받	·지	아ા	ᅴㅎ	ㅏ거	나	허	가	권	자
에	게	제-	출히	-ス]	아	니	한	자		
. 7	세4	5조	.제1	항	또	는	ズ	12	· 항	에

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u>4</u>)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 <u>8.</u> (현행 제11호와 같음)
- <u>⑤</u> -----<u>제4항</u>-----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부과 · 징수한다.	<u>.</u>